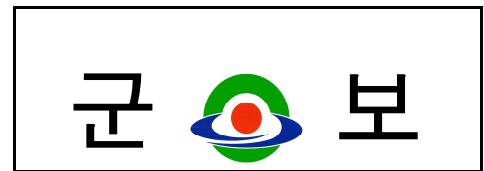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215호 2020. 1. 23.(목)

선 람	기 관 의 장

훈 령

- 예천군보건소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훈령 제420호)

회 람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예천군보건소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0년 1월 23일

예 천 군 수 김 학 동

예천군 훈령 제420호

예천군보건소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천군 주차장 조례」 제3조 및 제17조의4에 따라 예천군보건소에 부설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민원인 차량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소관) ① 예천군보건소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은 예천군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보건소장은 주차장의 관

리·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수탁자가 처리하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한다.

제3조(주차장 운영시간) ① 주차장의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되, 주차수요·교통 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주차장 운영시간 이전·이후 및 토요일·공휴일에는 무료로 하되, 주차수요가 많고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주차요금 징수대상) ①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한다.

1. 관용차량(별표 1의 표지 부착 또는 증명제시)
2.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3.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한 각종 행사에 초빙되어 참석하는 인사 및 일반인 차량 중 별표 2의 무료주차권을 제시하는 차량
4. 보건소장이 공익상 구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5. 주차장 운영시간 외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다만, 주차장 입차 후 바로 다음 운영시간 개시 전(09:00)까지 출차하지 아니한 차량은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2.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6급까지의 국가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6. 군에 거주하는 3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다자녀가정 또는 경북 다복가정 희망카드 소지자
- ③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및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환경 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가 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제5조(주차권) ① 주차장 이용자에게 발행하는 주차권은 월정기권 및 별표 2의 무료주차권으로 하며, 그 발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정기권 : 예천군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상 정기주차로 등록된 차량
 2. 무료주차권 : 군이나 예천군보건소가 주최한 각종 행사(회의 · 토론회 · 간담회 · 보고회 · 언론취재 등)에 초빙되어 참석하는 차량
- ② 제1항의 월정기권은 주차장 주차면수의 100분의 60 범위 안에서 발행할 수 있으며, 무료주차권은 행사주관부서에서 사전에 수령하여야 한다.

제6조(주차요금) 주차요금은 시간주차 요금과 월정기 요금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민원인(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30분까지 500원, 30분 초과 시 15분마다 250원. 다만, 민원처리가 1시간 이상 지연되어 이를 확인받은 경우 민원처리종료 시까지 무료로 한다.
2. 일반인 : 최초 30분 500원, 30분 초과 시 15분마다 250원
3. 월정기권 : 월 3만원

제7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는 주차관제시스템에 의한 방법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

1. 차량 입차 시 주차관제시스템으로 인식 후 입차하고, 출차 시에는 주차관제시스템에 의한 주차시간 및 요금을 확인 후 주차요금의 징수와 영수증 발급 후 출차한다.
2. 월정기권은 사용개시 전월 말일까지 주차관제시스템에 해당 차량을 등록하고 주차요금을 납부. 다만, 월중 전입 또는 차량구입 시 사용가능 기간 동안의 주차요금을 일할 계산한 금액을 납부하고, 주차관제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3. 주차장 운영시간 이전 또는 이후에 입차한 차량이 주차장 운영시간 개시 전에 출차하지 아니하고 운영시간 중에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운영시간 개시 시점부터 제6조제2호의 일반인 주차요금에 적용한다.
4. 월정기권의 사용에 있어서 주차요금은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장의 사용중지 또는 폐지 등 월정기권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이용자의 전출·교육·휴가 등으로 월정기권을 10일 이상 계속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기간 동안의 주차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5. 주차장 운영시간 종료 2시간 전에 입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2시간 주차요금을 선불 징수할 수 있으며, 운영 종료시간 이전 출차 시 주차장 이용시간에 따라 정산하여 환불한다.

제8조(주차요금의 관리) 징수된 주차요금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일일결산서에 따라 일일결산 후 다음 날 예천군 금고에 불입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근무일까지 불입한다.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장에 상주하고 있는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내에 주차하여야 한다.
2. 차량 안에 귀중품을 보관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건의장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주차장의 만차 시 이용차량은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 도착한 순서에 의하여 주차하여야 한다.
4. 주차장 운영시간 외의 시간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바로 다음 운영시간 개시 전까지 출차 하여야 한다.

제10조(주차거부) 주차장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

1.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2. 해당 차량이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다만, 청사 난방용 유류 등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기타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는 차량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출차의 거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출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2. 주차장 내에서 사고를 내고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2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① 관리인은 24시간 이상 장기 방치된 차량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방치차량 현황을 보건소장에게 일일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방치차량 소유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차한 때부터 출차할 때까지 주차 시간으로 계산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 책임) ① 주차장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을 손괴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

우 즉시 관리인에게 알리고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 운영시간 내에 주차관제시스템으로 인식된 차량이 보건소장 또는 관리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손괴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 안에서 귀책사유를 증명할 수 없는 차량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소재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2항의 손해배상액 산정은 손해배상 당시 시가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의 상한은 해당 피해로 인한 자기 차량 손해보험금으로 한다.

④ 보건소장은 주차장 운영시간 이외의 시간에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도난, 훼손 등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보건소장은 천재지변 또는 유사한 사례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4조(주차장 관리) ① 보건소장은 「예천군 주차장 조례」 별표 2의 주차장이용 안내 표지판에 별표 3의 내용을 기록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구획선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수시로 개·보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인의 임무 및 책임) ① 관리인은 제3조제1항의 운영시간에 근무하되, 차량의 입·출차 통제, 요금의 징수 및 보관·입금, 주차차량의 훼손

· 도난 예방순찰 등 주차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보건소장은 관리인의 관리의 소홀 및 불성실한 근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또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관리인은 주차요금의 관리와 각종 대장의 정리 및 보관을 성실히 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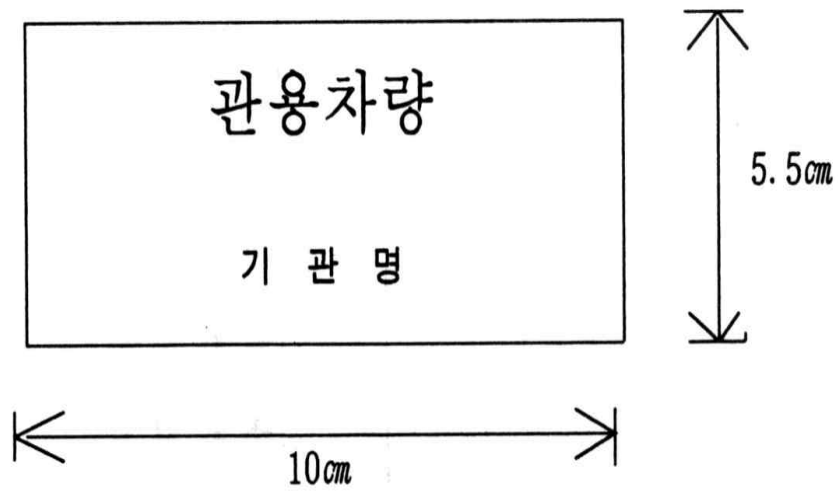
제16조(지도감독 등) 보건소장은 효율적인 주차장의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공무원 또는 별도로 지정한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에 관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훈령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관용차량 부착표지(제4조 관련)



무료 주차권(제4조 관련)

발행번호 : 제 호

무 료 주 차 권

사용일시 : 20 년 월 일

행 사 명 :

상기 주차권은 해당행사 당일 종료시간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천군보건소장

※ 규격 : 가로 10cm × 세로 10cm

주차장이용안내문(제14조 관련)

주차장 이용 안내

1. 주차요금
2. 운영시간
3. 장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4. 주차요금면제에 관한 사항
5.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예천군보건소장

※ 규격 : 가로 90cm × 세로 80cm

일 일 결 산 서

20 년 월 일

담당자	팀 장	소 장	결
			재

<주차요금 수납현황>

구분	출입 차량 총계	면제차량					징수차량		미출 차량
		소계	1시간이내 민원인	제4조 면제대상	행사 참석 차량	야간 휴일 주차	대수	징수금액	
일계									
누계									

※ 시간 주차권, 군금고 납입영수증 첨부

<군 금고 납부내역>

미출차량 현황	주차요금징수금액	군금고납입액	비 고
대	원	원	

<방치차량 이동상황>

방치 차량 현황				주차요금 징 수 액	비고
전일(A)	금일방치(B)	금일출차(C)	누계(A+B+C)		

작성자(관리인) : (인)

방치 차량 현황 보고

20 년 월 일

담당자	팀 장	소 장	결
			재

차량번호	입차일시	출차일시	방치기간	주차요금	기타특이사항

작성자(관리인) : (인)

◇제정이유

예천군 주차장 조례에 의거 공공청사에 설치된 주차장을 일반이용객에게 제공함에 따른 사용료 징수 및 운영관리 근거를 마련하여 보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건소 부설주차장은 보건소장이 운영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제2조)

나. 주차장 운영 시간을 규정 (제3조)

○ 운영시간 : 09:00 ~ 18:00

다. 주차요금 징수대상 (제4조)

○ 모든 차량에 주차요금을 징수하되, 면제차량과 감면차량은 별도 규정

○ 주차요금 징수면제차량

- 관용차량, 긴급자동차, 예천군 행사에 초대되어 무료주차권을 제시하는 차량, 주차장 운영시간 외에 주차를 한 차량 등

○ 주차요금 50% 감면 차량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6급까지의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 운동부상자

- 군에 거주하는 3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 또는 경북 다복가정 희망카드 소지자

- 관련법령에 의거 환경 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라. 주차권은 월 정기권과 무료주차권으로 구분하여 운영 (제5조)
마. 주차요금 (제6조)

○ 민원인(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초과 30분까지 500원, 30분 초과 시 15분마다 250원(민원처리 1시간 이상 지연 시에도 무료)

○ 일반인 : 최초 30분 500원, 30분 초과 15분마다 250원

○ 월정기권 : 월 3만원

바.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규정 (제9조)

사. 주차장 이용거부 및 강제 출차 조항 규정 (제10조)

○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 해당 차량이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다만, 청사 난방용 유류 등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기타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는 차량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아. 피해보상 및 손해보상의 책임에 대하여 규정 (제13조)

자. 보건소장 및 주차장 관리인의 임무 및 책임에 대하여 규정 (제15조)